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이 「청원군 가덕면 시동리」에서 「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25」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불부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제2조(위치) 중 「시동리」를 「한계리 산25」로 한다.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위치)중 "시동리"를 "한계리 산25"로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